



국가재정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국회 재정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총괄담당관실 양성민 분석관

개정 배경

- 국회는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와 국회의 재정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¹⁾을 의결(2026.1.29.)

개정 국가재정법 국회 심의 경과

2025. 9. 16.(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21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20건, 정부제출 1건) 심사,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마련
2025. 9. 25.(목)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
2025. 11. 12.(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수정가결
2026. 1. 29.(목)	본회의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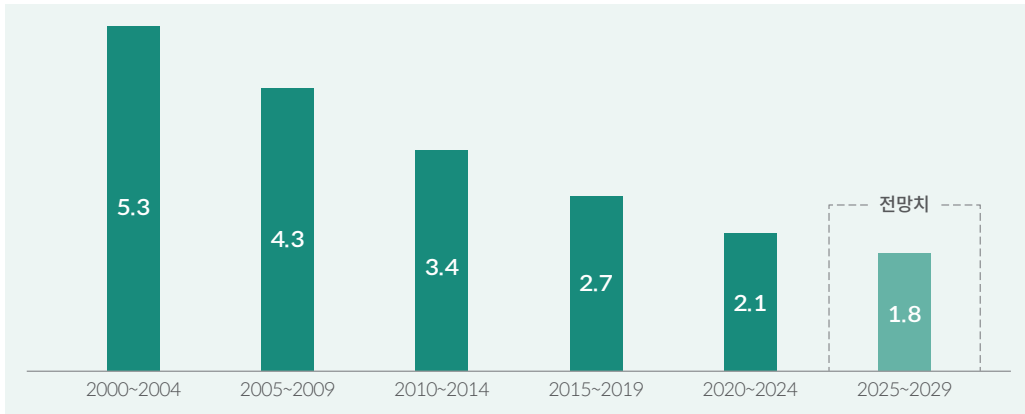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경제 불확실성 증대,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증대

- 이러한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은 ▲중기재정관리의 실효성 강화, ▲예산편성·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세입 및 조세관리의 책임성 강화 등 국가재정 운용체계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

[그림 1] 평균 잠재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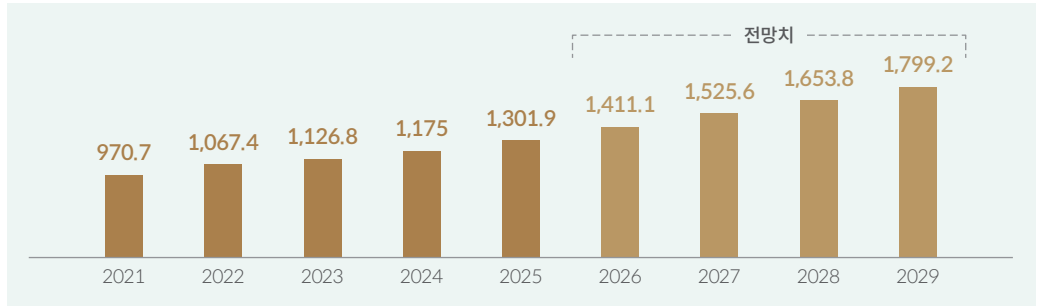
주: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1)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사유 구체화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그림 2]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

주: 2024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5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6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주요 개정 내용 ① - 중기재정관리의 실효성 강화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강화²⁾

- (배경)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 운용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전년도 계획 대비 실적 평가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관리의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기능하는 데 한계
- (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목표에 대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개정
- (의의) 재정목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을 통해 국가재정 운용계획 상 정책목표와 재정운용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 심의기능 강화

▪ 장기재정전망의 적시성 강화³⁾

- (배경)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재정전망 체계로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와 재정제도의 변경 내용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
- (내용)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의의) 탄력적이고 시의성 있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전망의 적실성 제고

▪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⁴⁾

- (배경) 예비비 사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산출 근거 및 집행 내역의 불명확성, 예비비 사용실적에 대한 국회 보고 미흡 등 예비비의 주관적·임의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
- (내용)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집행 가능성 등 예비비 사용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에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
- (의의) 예비비 운용에 대한 제도적 관리·점검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예비비 운용의 자의성을 완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주요 개정 내용 ②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2) 개정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3) 개정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 단서

4) 개정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 및 제4항

[표 1] 최근 5년간 예비비 관련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현황

회계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35	22	27	26	20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를 예비비 사용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며, 예비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실적을 국회에 보고할 것 ·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비비 요구 시 실제 총당 내역을 반영한 산출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작성·제출할 것 · 예비비 배정 및 집행 시 법령상 절차 준수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예비비 선정·배정 시 예측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하거나 계약에 필요한 적정 규모에 대해서만 계상할 것 				

자료: 「각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구체화⁵⁾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개정

▪ 세입추계의 현실성·신뢰성 강화⁶⁾

- (배경) 대규모 초과세수·세수결손의 반복적 발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약화되고, 경기 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한계 노출
- (내용) 정부로 하여금 매년 9월 해당 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에 추계 방법과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
- (의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세입예산 운용의 책임성 강화

[표 2] 최근 5년간 국세수입 본예산 및 수납실적 현황

(단위: 조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본예산(A)	292.0	282.7	343.4	400.5	367.3
수납실적(B)	285.5	344.1	395.9	344.1	336.5
세수오차(C=B-A)	△6.5	61.3	52.6	△56.4	△30.8
세수오차율(C/A)	△2.2	21.7	15.3	△14.1	△8.4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 개정 내용 ③
- 세입 및 조세관리의 책임성 강화

5) 개정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6) 개정 국가재정법 제55조의2

▪ 조세지출의 투명성·책임성 강화⁷⁾

- (배경)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세입기반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 (내용)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
- (의의)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실효성과 조세지출 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

[표 3] 최근 5년간 국세수입 본예산 및 수납실적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2025년(전망)
국세감면액(A)	57.0	63.5	69.8	70.5	76.4
국세수입총액(B)	364.0	422.9	370.4	365.6	400.3
국세감면율[A/(A+B)]	13.5	13.0	15.8	16.1	16.0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3	14.6	14.3	14.6	15.5

자료: 「조세지출예산서」(대한민국정부)

결론 및 향후 논의 과제

▪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은 중기재정 수립부터 예산의 집행 및 세입 관리에 이르기 까지 재정 운용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 심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

- 아울러, 본회의에 부의된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 및 집행 정보의 국회 제출 등’과 관련한 입법 논의는 예산 집행 단계에서의 국회 관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향후 논의 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12.10. 본회의 부의)

▪ 확대된 국가재정 규모와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편성·집행·환류 전 과정에서 국회의 재정 통제·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정립이 남은 과제

- 이와 관련하여 국회개혁자문위원회(국회의장 자문기구) 권고(2025.12.) 및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부처별 지출한도 및 예산요구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⁸⁾, 정부의 증액동의 권한 범위 명확화⁹⁾ 등 국회의 예산 심사권 실질화를 위한 공통된 문제의식 제기

▪ 이번 개정된 「국가재정법」의 현장 이행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는 한편, 확대된 재정 운용 여건에 상응하는 예산 심의 및 집행 통제 기능의 실질화에 관한 논의를 심화해 나갈 필요

7) 개정 국가재정법 제88조제3항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77호)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39호)